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
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보훈선양사업 추진

3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대상 후단 신설(안 제3조)
 -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
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현행 조례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광복회 등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,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는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